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465

발의연월일: 2020. 12. 15.

발 의 자:이형석·조오섭·송갑석

문진석 · 안민석 · 민형배

이용빈 • 윤영덕 • 이병훈

양정숙 의원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이 담보할 수 있는 목적물은 일반 건축물과 소상공인의 건축물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소상공인의 경우 위험 관리에 취약한 경우가 많아 재해 등의 발생시 실업, 생존권 위협 등의 사회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풍수해보험의목적물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시설물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실질적인 피해복구를 할 수 있도록 2018년 12월에 법을 개정한 바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평균 매출액이 각각 2억 900만원과 3억 3,600만원으로 1억여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음을 감안하면 많은 소기업이 영세기업에 해당함. 또한 풍수해로 인한 피해액 현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은 기업당 평균 2천만원이며 소기업은 평균 1억 5천만원으로 소기업이 소상공인에 비해 피해액이 7.5배나 큼에도 피해에 대한

직접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풍수해보험의 목적물에 소기업의 시설물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풍수해로 발생하는 소기업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기업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호 신설). 법률 제 호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풍수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험목적물) 풍수해보험이	제4조(보험목적물)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의 목적물	
(이하 "보험목적물"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및 그	
에 부수 또는 포함되는 동산으	
로 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이 운영하는 사업
	장의 건축물과 시설물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